

## 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신 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특례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제외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·재산세 감면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적용</li> </ul>

## □ 개정내용

- 인구감소지역등\*에 대한 감면을 예상하고 투자한 납세자에 대한  
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 규정 신설

\* 인구감소지역, 인구감소관심지역(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§2.12의2)

- (취득세) 인구감소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 또는 착공 등을 한 경우라면 취득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보고 감면을 적용

- (재산세)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등에 대해  
잔여 감면기간(재산세 5년간 50% 등) 동안 재산세 감면을 지속 적용

※ ①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부동산, ②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 
토지에 건축한 주택·건축물, ③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부동산

- (법인지방소득세)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공제(§167의5)  
적용

## 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(2026. 1. 1.)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2)